

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24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9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 1건 8필지 2,437㎡ 1,135,020천원이고, 건물취득 2건 8동 1,685.19㎡ 3,283,033천원입니다.

가. 토지 취득

- ① 평창읍소재지 종합 정비사업(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 조성)
: 8필지 2,437㎡ 1,135,020천원

나. 건물 취득

- ① 평창읍소재지 종합 정비사업(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 조성)
: 7동 596.19㎡ 260,033천원
- ② 평창읍소재지 종합 정비사업(청소년문화센터 신축)
: 1동 1,089㎡ 3,023,000천원

3. 붙임자료

- 가.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.
- 나. 사업계획서 1부.
- 다. 관련법령 발췌 1부.

2016년 취득·처분대상 재산목록(4차)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기준가격	취득 시기	취득사유	비 고 (소유자)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토지 취득(1건,8필지)			2,437	1,135,020			
소계 (8필지)			2,437	1,135,020			
1	대	평창읍 하리 136-1			2016 하반기	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 광장 조성 (평창읍)	박봉*
2	대	“ 137-31					이재*
3	대	“ 137-40					이재*
4	대	“ 137-37					최순*
5	대	“ 137-35					정해*
6	대	“ 137-29					심상*
7	대	“ 137-9					이경*
8	대	“ 135-2					이경*
건물 취득(2건, 8동)			1,685.19	3,283,033			신규 1동 취득 7동
소계 (7동)			596.19	260,033			
1		평창읍 하리 136-1 가동	32.69		2016 하반기	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 광장 조성 (평창읍)	박봉*
2		평창읍 하리 136-1 나동	36				박봉*
3		평창읍 하리 137-31 1,2층	221.19				이재*
4		평창읍 하리 137-37	75.7				최순*
5		평창읍 하리 137-35	74.47				정해*
6		평창읍 하리 137-29	76.92				심상*
7		평창읍 하리 135-2	79.22				이경*
소계 (1동)			1,089	3,023,000			
1		평창읍 하리 136-1 일원	1,089	3,023,000	2016 하반기	청소년 문화센터 건립	

<사업계획>

「평창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」 공유재산(매입) 관리계획 승인(안)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평창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중 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편의제공을 도모.

1. 추진경위

- 2013. 10. 8. : 신규사업 확정
- 2014. 2. 14. :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(수)탁 계약체결
- 2014. 2. ~12. : 기본계획 수립
- 2015. 1. ~11. : 시행계획 수립(실시설계)
- 2016. 3. ~ : 세부설계 및 공사착공

2. 기본계획개요

- 사업명 : 평창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
- 위치 : 평창읍 중리, 하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14. 1. ~ 2017. 12.
- 사업량 : 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 조성, 지역주민 어울림공간 조성, 재래시장 명품거리 조성,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, 종부교 경관개선, 역량강화사업(주민교육, 선진지 견학)
- 총사업비 : 9,510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'14년	'15년	'16년	'17년
계	9,510	957	886	3,047	4,621
국비(70%)	6,510	670	620	2,132	3,088
군비(30%)	3,000	287	266	915	1,533

- 사업비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량	계	토지매입	건축취득		기타 (공사비)	비고	
				건립	매입			
계		9,510	1,135	3,023	260	5,092		
기초 생활 기반 확충	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	1동 (1,089㎡)	5,252	1,135	3,023	260	-	부지 매입중
	지역주민 어울림공간	1개소 (707㎡)		-	-	-	245	공사중
	재래시장 명품거리 (5일장 개장노선)	350m		-	-	-	589	‘17년 계획
지역 경관 개선	청소년 특화거리	220m	2,909	-	-	-	1,761	‘16년 하반기 추진
	종부교 경관개선	155m		-	-	-	1,148	공사중
지역 역량 강화	교육, 홍보 등	1식	1,349	-	-	-	371	-
	실사설계 외 제경비	1식		-	-	-	978	-

3. 사업대상지

- 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 : 평창읍 하리 136-1대 외 7필지
- 지역주민 어울림공간 : 평창읍 중리 298-2대 외 1필지
- 재래시장 명품거리 : 평창읍 하리 137-80대 외 전통시장 내
- 청소년 특화거리 : 평창읍 노성로 일원 4개소
- 종부교 경관개선 : 평창읍 종부리 1006천, 종부교

4. 매입예정현황

○ 토지취득(매입)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[㎡]	재산가액(원)		소유자
				대장가격	추정가격	
계	8필지		2,437	868,966,900	1,135,020,000	
평창읍 하리	136-1	대지	265	86,496,000	132,500,000	박**
“	137-31	대지	159	65,523,900	79,500,000	이**
“	137-40	대지	119	49,039,900	59,500,000	이**
“	137-37	대지	274	84,364,600	115,080,000	최**
“	137-35	대지	281	85,620,700	118,020,000	정**
“	137-29	대지	288	94,924,800	144,000,000	심**
“	137-9	대지	301	96,922,000	126,420,000	이**
“	135-2	전	750	306,075,000	360,000,000	이**

※ 토지매입비는 가감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감정평가 시 변동될 수 있음.

○ 건물취득

- 매입

소재지	면적(㎡)	규모	구조	용도	재산가액(원)		소유자
					대장가격	추정가격	
7동	596.19					260,032,900	
평창읍 하리 136-1 가동	32.69	1층	블록	주택		11,441,500	박**
평창읍 하리 136-1 나동	36	1층	ALC블럭	주택		34,632,000	
평창읍 하리 137-31	1층 138.39	2층	벽돌	근생		69,195,000	이**
	2층 82.8			경량철골	주택		
평창읍 하리 137-37	75.7	1층	시멘트벽돌	주택		31,794,000	최**
평창읍 하리 137-35	74.47	1층	시멘트벽돌	주택		31,277,400	정**
평창읍 하리 137-29	43.2	1층	시멘트벽돌	주택		18,144,000	심**
	33.72		조적조	주택		18,546,000	
평창읍 하리 135-2	49.4	1층	목조	근생		7,410,000	이**
	29.82		조립식담장조	근생		4,473,000	

※ 건물매입비는 가감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감정평가 시 변동될 수 있음.

- 신규(건립) : 2016.3.25.승인

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규 모	구 조	사 업 비(원)
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	평창읍 하리 136-1 외 7필지	1,089	지하1층 지상2층	철근콘크리트조	3,023,000,000

- 사업비 소요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공사비				취득현황		
		소계	건축공사	토목공사	조경공사	소계	토지	건물
							8건/2,437 m ²	7동/596.19 m ²
사업비	4,418	3,023	2,238	330	455	1,395	1,135	260

1. 토목공사 : 330백만원

- ①부지조성 : 200백만원
- ②부대시설/상하수도 : 30백만원
- ③철거/폐기물처리 : 100백만원

2. 건축공사 : 2,238백만원(지하1층/지상2층, 태양광발전기40kw, 야외화장실)

- ①센터 건축비 : 2,018백만원
- ②태양광발전설비 : 200백만원
- ③야외화장실 : 20백만원

3. 조경공사 : 455백만원

- ①조경식재(잔디 및 교목) : 80백만원
- ②편의시설(벤치 및 파고라) : 100백만원
- ③부지포장 : 180백만원
- ④가로등(6개소) : 25백만원
- ⑤체육시설(3인농구장) : 55백만원
- ⑥안내판 : 5백만원
- ⑦관문 : 10백만원

5. 향후추진계획

- 군정조정위원회(공유재산심의회) 심의 : 2016. 7.
-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: 2016. 8.
- 매입절차 이행 : 2016. 9.
 - 감정평가 : 국가공인 감정평가기관 2인 이상의 감정 결과에 따라 매입금액 산정
- 사업시행 : 2017. 3. ~ 2017. 1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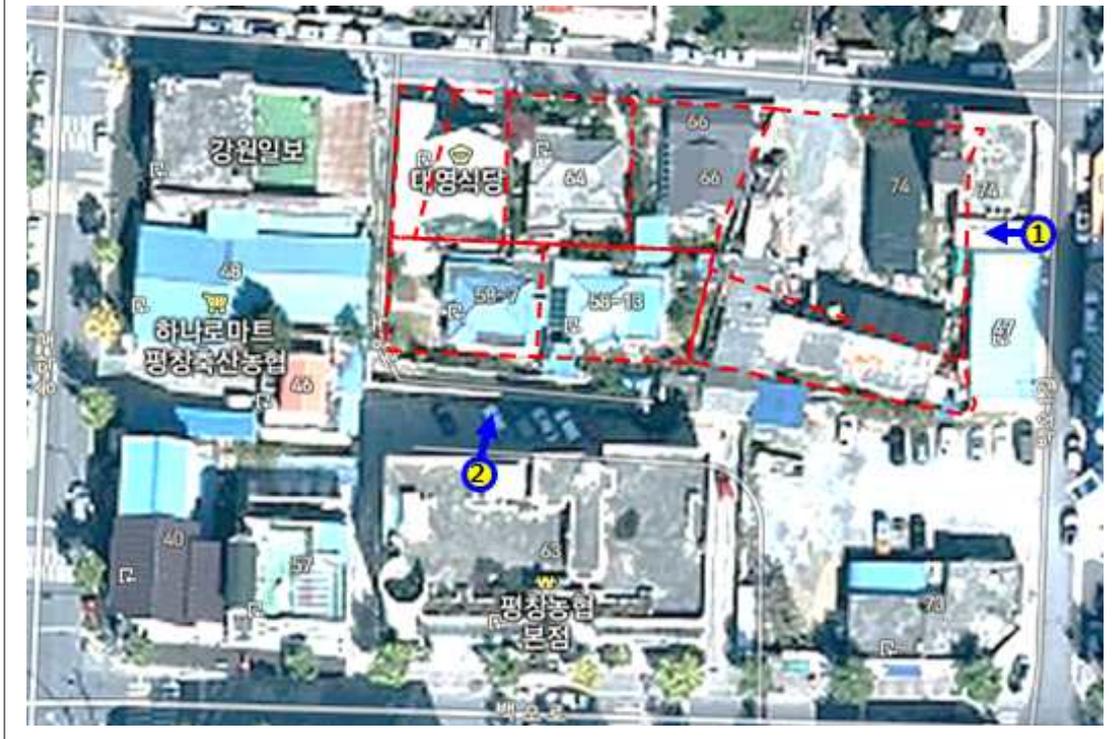
6. 기대효과

-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교류 공간 활용이 되도록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선도
- 다목적 광장 조성을 통해 도심 속 녹색공간을 조성하여, 이용객들의 휴식 및 휴게 서비스를 제공
- 평창읍 주민의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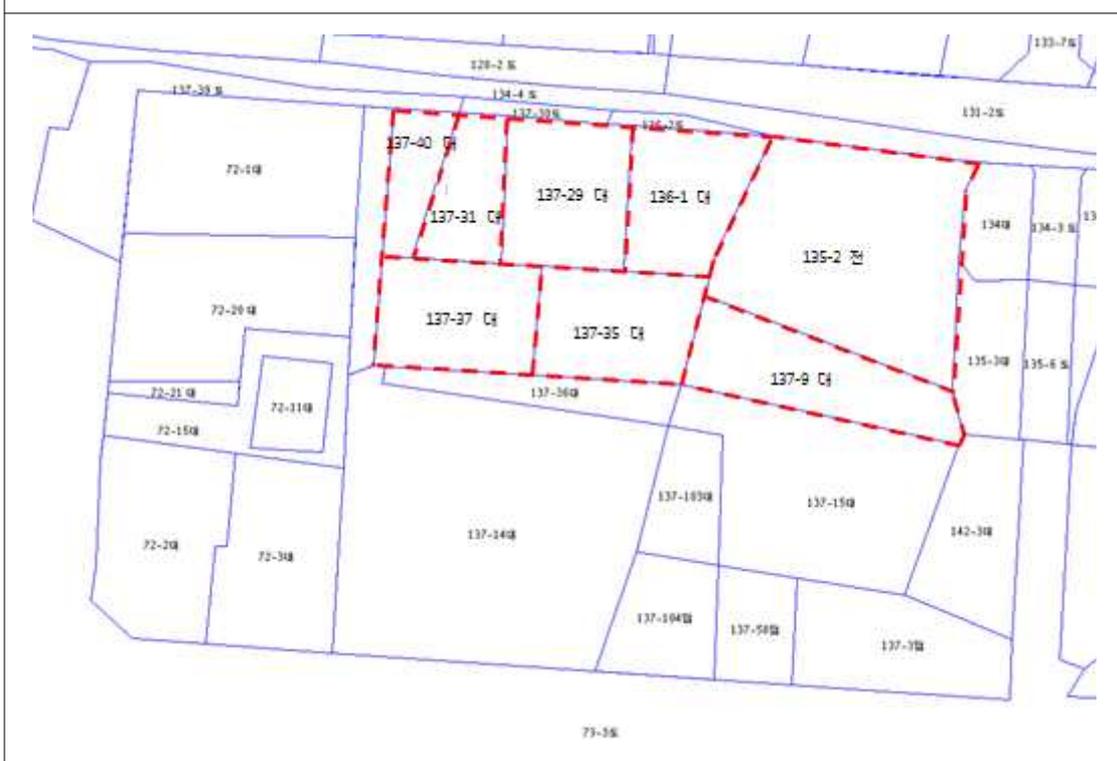
- 【붙임】 1. 위치도 및 지적도.
2. 현장사진. 끝.

1. 위치도 및 지적도

위 치 도



지 적 도



2. 현장사진

현 장 사 진 1



현 장 사 진 2



<관계법령 발췌>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
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□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

제5조(심의회의 업무)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08.10.17>
3. 법 제11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
4. 삭제 <2015.10.08.>
5.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
6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, 취득·처분에 관한 재심의 (다만,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)
7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
8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9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
10.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
2.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·처분
3.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·처분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
 - 가.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
 - 나.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
 - 다. 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(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)시 취득·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